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0. 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12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7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2014. 9.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나. 주요골자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7조제3항)
 - 위원 중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대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10.2.26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교육의원”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가로 대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 호
----------	-------

제출연월일 : 2014.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7조제3항)
 - 위원 중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8.7~8.27,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구의원 2명, 교육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하며, “전문가 2명을”을 “전문가 3명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u>구의원 2명</u>, <u>교육의원 1명</u>,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u>교육청 국장급 1명</u>, 그 밖에 <u>교육관련 전문가 2명</u>을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 ----- <u>구의원 2명</u>----- ----- ----- <u>전문가</u> <u>3명</u>을 -----.</p> <p>④ ~ ⑤ (생략)</p>